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441호 2023년 1월 20일(금)

공 고

○ 보상계획(열람)공고 2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영랑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 중로3-22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20.

속 초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 중로3-22호선)
- 명 칭: 속초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영랑공원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현
세종특별자치시 마은로 78, 502호(고운동, 세종 스마트큐브Ⅱ)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속초시 금호동 산278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4. 02. 28.

마.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시 점	중 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연장	금회시행	기시행				
도로	중로	1	26	20~26	주간선	1,154	970	184	교동620-37(중1-1)	교동784-37(중1-1)	건설부고시 제37호(1976.03.27.)	-
도로	중로	3	22	12~15	보조간선	110	110	-	속초시 금호동 617-48	속초시 금호동 601-2	속초시 고시 제2020-53호(2020. 4. 10.)	-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세부내역 별지 참조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속초시 금호동	601-14, 605-20, 605-24, 605-25, 614-16, 614-17, 614-20, 614-49, 614-52, 614-68, 614-70, 614-71, 614-73, 614-83, 614-84, 614-85, 614-87, 615-6, 615-7, 615-8, 616, 617-53, 617-54, 617-56, 617-67, 617-69, 617-70, 617-72, 617-73, 617-74, 624-9
	속초시 교동	618-19, 619-103, 619-108, 619-109, 619-132, 619-133, 619-134, 619-137, 619-138, 619-139, 619-140, 620-35, 620-37, 620-42, 620-77, 620-78 770-29, 784, 784-1, 784-6, 784-33, 784-61, 784-104, 784-106, 784-110, 784-111, 785-10
물건	위 토지 상에 지장물 등	

※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 속초시 고시 제2023-008호로 고시된 토지 및 그 위에 설치된 물건 등과 권리 일체

나. 토지 등의 상세내역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같은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3. 01. 20. ~ 2023. 02. 03.(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사업시행자: 영랑공원개발 보상사무소(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254(동명동) 2층, ☎ 033-631-9633)
- 시 청: 속초시청 공원녹지과 (☎ 033-639-2803)

다. 이의신청: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 산정

나. 보상의 시기 : 보상액 산정 완료시 보상협의 요청(보상계획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보상액 산정하여 개별통보)

다. 보상액 지급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장물 등의 이전·철거 후 현금지급(계좌입금)
- 물건(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경우 해당 토지 보상 이후 또는 동시

라.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의 산정 → 보상액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공탁)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되,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 인	연락처	비 고
			성 명	주 소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신분증 앞뒤면 사본1부 첨부)

☞ 감정평가추천서 업체명, 감정평가사 등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을 명기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 및 물건조서에 편입된 내역이라도 추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보상금액, 계약절차,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합니다.

다.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라.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하여는 해당 공부를 기준으로 공고하며, 열람기간 중 실제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대로 보상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영랑공원개발 주식회사 보상사무소 (☎033-631-9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